

제28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1차 회의 2022. 3. 22.(화)

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를 도모하는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 - 10명 이내의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평일 08시부터 24시까지 운영
- 라.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과 구성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 및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1
- 나. 예산조치 : 불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자치행정과
- 라. 입법예고 : 2022. 3. 11. ~ 3. 17.(일간) / 의견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취약계층의 보호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한 안전입니다.

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 안 제6조에는 행복마을관리소의 구성원과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기능과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 안 제11조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조례의 체계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, 행안부 주관 혁신사례 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도비(50%) 보조사업으로 2022년 1월 기준 31개 시·군에 95개소가 운영 중이며, 우리 시에는 진건읍, 진접읍, 조안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, 안전순찰 및 지역환경 개선과 생활불편 해소, 지역 특화사업 분야로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

본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주민 이용 만족도가 높은 만큼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, 제10조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조례에 의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지원대상 : 관내 행복마을관리소
- 지원내용 :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비
- 지원금액 : 예산편성 범위내
- 산출기초(도비 50%, 시비 50%)
 -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(신규 설치시) : 55,000천원
 - 인건비(행복마을지킴이 및 사무원 10명 급여, 4대보험료, 명절휴가비 등) : 336,674천원 * 3개소 = 1,010,022천원
 - 운영 및 사업비 : 46,000천원 * 3개소 = 138,000천원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합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총 소요액	6,252	1,149	1,200	1,248	1,302	1,353
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	0	-	-	-	-	-
인건비	5,562	1,011	1,062	1,110	1,164	1,215
운영 및 사업비	690	138	138	138	138	138

※ 현재 설치된 3개소(진건읍, 진접읍, 조안면)은 2021년 설치로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 예산편성 불필요

다. 재원조달방안: 일반회계로 편성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행정기획실 자치행정과장 이유미